

[별지서식 제1호 앞면] 본 광고사전검토필증은 온라인을 통해 교부되었습니다.

접수번호 01-01-P-1900367	광고사전자율심의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자명	주식회사 웃가네	대표자	김종규	사업자등록번호	107-87-68428
신청자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신길로62길 1(영등포동,남신빌딩 4층)			연락처	담당자명: 김영숙 연락처: 010-9319-7097 팩스: 02-844-1414
광고상품명	신안 꾸지뽕 열매	광고주명	주식회사 웃가네	광고매체	신문 (A안)
대행사명	주식회사 웃가네	제작자명	주식회사 웃가네	심의구분	초심 O 수정심
검토의견					
첨부 광고물 광고적합 의견임.					
변경내용					

광고물의 사전 검토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귀중

2019년 6월 18일
신청인 주식회사 웃가네

심의의결	심의결정	광고적합	2019년 6월 25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심의번호	19-P1-06-3	
	기타		

※ 주의사항은 뒷장에 첨부되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제1호 뒷면] 본 광고사전검토필증은 온라인을 통해 교부되었습니다.

광고 이미지

신안 꾸지뽕 ▼

인터넷 검색창에 <신안 꾸지뽕>을 검색하시면 다양한 건강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 지정 신안 다도에서 해풍맞고 자란 신안 꾸지뽕 열매

* 신안의 명소 천사대교

신안군 꾸지뽕밭을 엄선하여 만듭니다.
농가의 손길로 꾸지뽕 열매추출물 100%를 담아
성성스럽게 만듭니다.

천사의 섬 신안, 꾸지뽕 본고장의 명성 그대로를 진액으로 담아 출시!

깨끗한 청정지역 꾸지뽕의 본고장 신안 꾸지뽕 열매를 그대로 마신다!

일체의 척거를 없이 엄선한 신안군 꾸지뽕 진액 헌청!
해풍맞고 자란 국내 신안 꾸지뽕 열매추출물을 100%를 담아.

출시기념
1박스 30포
68,000원!

제품명 : 신안꾸지뽕 열매 / 제조원 : 출은안농조합법인 / 판매원 : 신안 꾸지뽕 가로특화사업단
원재료명 및 함량 : 꾸지뽕열매추출물 100% (고형분 3.7%이상) 제품으로 순수 국내산
꾸지뽕 열매추출물을 그대로 담아낸 제품입니다.

국내산 꾸지뽕 열매추출물 100%를 담은 귀한 제품
우리나라의 대표적 꾸지뽕 재배 지역은 신안으로, 해풍맞고 자란 신안 꾸지뽕 열매 전액을 자신있게 소개합니다. 예로부터 꾸지뽕 뿌리와 잎은 차로 마시고, 열매는 즙으로 마신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꾸지뽕 열매는 수화시키기가 한정되고, 일일이 사람손으로만 수확하다 보니 이와 귀한 수확이 있습니다. 이 귀한 국산 꾸지뽕 열매추출물을 100%를 사용하여 신안군 가로특화사업단에서 꾸지뽕 열매 진액을 어렵지게 출시했습니다.

청정지역 천사의 섬 신안 천사대교 개통
유네스코 신안다도해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청정 신안군은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청정지역으로 모든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이루어져 꾸지뽕을 생산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입니다. 최근 국도로는 가장 길고, 신안군 주요 5개 시설은 일대, 일대, 팔금, 자리를 잇는 천사 대교(7.2km), 사진의 개통으로 꾸지뽕과 더불어 신안의 명소가 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크고작은 청정 1004개의 섬을 둘러보세요.

꾸지뽕 열매를 그대로 마신다!
〈꾸지뽕 열매 진액〉 출시기준은 60ml 30포 1박스 68,000원, 2박스 60,000원, 4박스 000,000원으로 부담없는 가격으로 할인적용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국내산 꾸지뽕 열매추출물을 그대로를 마실 수 있는 좋은기회입니다. TV홈쇼핑 판매중인 제품으로 믿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드시기 편하고 애상으로 간접합니다. 건강관리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꾸지뽕 열매 진액 강력 추천드립니다.

농협 301-0104-2265-61 예금주 : 주식회사 올가네
무료배송 / 신용카드 구입가능(할부가능) / 24시간 주문가능

문의전화 : 02-458-0821
구입문의 02-458-0821

기타		면 번 호	2
----	--	-------	---

심의의결	심의결정	광고적합	2019년 6월 25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심의번호	19-P1-06-3	
	기타		

※ 필증 사용시 주의사항

- ①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임의 변경하여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② 원하실 경우,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로부터 사전에 검토 받은 사실을 심의필 광고물에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광고물 우측상단에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사전검토필 심의번호> 문구로 한정하며, 기구 로고 필요 시 사무처에 별도 문의바랍니다.
단, 패키지 및 기타 포장용기에는 기구 로고 및 심의번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③ '2항의 표시 이외에 광고표현 내 심의기구 언급 및 필증 이미지와 기구 로고 사용은 불허합니다.
- ④ 필증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 ⑤ 필증을 위·변조하거나 상기 사항 위반 시 모든 법적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을 알립니다.
- ⑥ 필증에 대한 확인 및 기타 문의는 기구 사무처(02-2144-4300/ 4304)로 연락 바랍니다.